

거창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7~ 20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07. 7. 5.
제출자	거창군수

1. 개정이유

현행 군민상 추천시 부문별 시상을 하는 것으로 혼동할 여지가 있어 이를 추천부문 구별없이 통합하고, 거주지 제한없이 거창군의 발전과 명예를 빛나게 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자격을 줌으로써 군민상 수상자의 폭을 넓히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상대상(안 제3조)

- 효행, 봉사, 농촌소득, 체육, 문화, 애향 그 밖에 제반분야에서 거창군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자에게 시상
- 군민상은 대상 1인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, 별도로 특별상 시상

나. 수상자의 자격(안 제4조)

- 군민상 대상 후보자는 본적지를 거창군에 두고 있거나 시상 예정일 현재 10년 이상 거창군에 거주한 자
- 군민상 특별상 후보자는 제1항의 자격요건에 불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 하고, 사망자는 추서

다. 후보자의 추천시 불필요한 주민등록초본 삭제(안 제6조제2항)

라. 위원장의 공정한 수상자 선정을 위한 장치 마련(안 제 11조제2항)

- 위원장이 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수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지방자치법 제22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그 밖에

(1)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(2)입법예고(2007. 6. 14.~ 7. 3.) 결과 : 의견 없음

거창군조례 제 호

거창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민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거창군민상(이하 “군민상”이라 한다)”를 “거창군민상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을 제2조 본문으로 하고 내용 중 “군민상”을 “거창군민상(이하 “군민상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시상대상) ①효행, 봉사, 농촌소득, 체육, 문화, 애향 그 밖에 제반분야에서 거창군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시상한다.

②군민상은 대상 1인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, 별도로 특별상을 시상할 수 있다.

제4조의 제목“(시상자의 자격)”을 “(수상자의 자격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되, 내용 중 “수상후보자”를 “대상후보자”로, “10년 이상”을 “시상예정일 현재 10년이상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군민상 특별상 후보자는 제1항의 자격요건에 불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. 다만, 사망자는 추서할 수 있다.

제6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제4호를 제3호로 하되, 내용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이내에”를 “전까지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위원장이 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수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처리키”를 “처리하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거창군의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<u>거창군민상(이하 “군민상”이라 한다)</u>을 수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<u>거창군민상</u> -----.</p>
<p>제2조(시상 및 시기) ①<u>군민상은 연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군민의 날(매년 9월 25일)로 한다.</u></p>	<p>제2조(시상 및 시기) <u>거창군민상(이하 “군민상”이라 한다.)</u>----- -----</p>
<p>제3조(추천·시상) ①<u>군민상 추천부문은 다음과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효행부문 : 효자, 효부</u> 2. <u>봉사부문 : 지역개발, 주민복지, 사회질서</u> 3. <u>농촌소득부문 : 창의개발, 자립경영, 농·축산물 생산수출</u> 4. <u>체육부문 : 체육공로, 지도연구 및 기타</u> 5. <u>문화부문 : 교육, 예술</u> 6. <u>애향부문 : 고향발전, 고향봉사</u> <p>②<u>군민상은 1인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.</u></p>	<p>제3조(시상대상) ①<u>효행, 봉사, 농촌소득, 체육, 문화, 애향 그 밖에 제반분야에서 거창군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시상한다.</u></p> <p>②<u>군민상은 대상 1인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, 별도로 특별상을 시상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4조(시상자의 자격) <u>군민상 수상 후보자는 본적지를 거창군에 두고 있거나 10년이상 거창군에 거주한 자로 한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4조(수상자의 자격) ①----- <u>대상 후보자</u>----- ----- <u>시상예정일 현재 10년이상</u> -----.</p> <p>②<u>군민상 특별상 후보자는 제1항</u></p>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후보자의 추천) ① (생략) ② (생략) 1. ~2. (생략) 3. 주민등록초본 1통 4. 기타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③ (생략)</p> <p>제7조(수상자 결정)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상 예정일 7일 이내에 군민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.</p> <p>제11조(회의) ① (생략) <신설></p> <p>제12조(간사 및 서기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키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. ② (생략)</p>	<p><u>의 자격요건에 불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. 다만, 사망자는 추서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6조(후보자의 추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 ~ 2. (현행과 같음) <삭제> 3. 그 밖에 -----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수상자 결정) ----- ----- -----전까지 ----- -----.</p> <p>제11조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 ②위원장이 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수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.</p> <p>제12조(간사 및 서기) ①----- -----처리하기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</p>